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 요약 보고서 -

2009. 12

－ 목 차 －

- 토지이용계획 변경 / 1
- 교통·물류계획 변경 / 10
- 정보통신계획 변경 / 13
- 산업개발계획 변경 / 16
- 주거환경계획 변경 / 18
- 환경보전계획 변경 / 19
- 여가·공원·녹지계획 변경 / 20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내용	■ 토지 수요예측					■ 토지 수요예측								
	구분	2000년 현재 용도지역 현황		2020년 소요면적		증감	구분	2006년 현재 용도지역 현황		2020년 소요면적		증감		
		km²	%	km²	%			km²	%	km²	%			
	계	539.73	100.0	539.73	100.0	-	계	539.79	100.0	539.79	100.0	-		
	시가화 구역	86.01	15.9	110.79	20.5	24.78	시가화 구역	92.53	17.1	114.51	21.2	21.98		
		주거	63.55	11.8	84.74	15.6		21.19	주거	69.86	12.9	84.74	15.7	14.88
		상업	7.59	1.4	10.66	2.0		3.07	상업	8.32	1.5	10.66	2.0	2.34
		공업	14.87	2.8	15.39	2.9		0.52	공업	14.35	2.7	19.11	3.5	4.76
	비시가화 구역	453.72	84.1	428.94	79.5	-24.78	비시가화 구역	447.26	82.9	425.28	78.8	-21.98		
변경사유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의 변경이 없으므로, 주거·상업용지 수요변화 없음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대전광역시 제조업 구성비(종사자수 기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조업 종사자수당 부지면적 원단위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추정 시 종사자수의 감소로 인해 대전광역시의 공업용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 시점에서 기존 종사자수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 추정시 대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국가정책을 반영하기 어렵고, 현실여건과 괴리(실질적인 수요가 있으나, 수요추정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가 발생하는바													
	○금번 대전시 산업용지 수요예측에 적용한 원단위법으로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방식을 사용하여 대전광역시의 중장기 경제전망 등 미래 경제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기법을 변경함.													
보고서	○ 63 ~ 70장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시가화예정용지 i) 기본방향 • 당해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 •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 양적 기준을 제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방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대 상 지 역</td><td>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 - 도시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화 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지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td><td></td></tr> <tr> <td>계 획 방 향</td><td> • 시가화예정용지는 상위계획상의 개발 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후 계획 • 우선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토록 계획 </td><td></td></tr> </tbody> </table> ii)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 목표년도 인구와 도시기능 및 발전방향 등 도시지표 달성을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지 역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 - 도시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화 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지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계 획 방 향	• 시가화예정용지는 상위계획상의 개발 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후 계획 • 우선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토록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i) 기본방향 •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 당해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는 용지로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부합되도록 개발촉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개발 •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지정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ii)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 지정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상위관련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된 17.40km²와 • 대전시의 현안사항과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총량 1.72km² 추가확보 • 시가화예정용지중 주 용도를 지원·보완하거나 복합개발 하는 것이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복합 용도 개발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지 역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 - 도시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화 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지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계 획 방 향	• 시가화예정용지는 상위계획상의 개발 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후 계획 • 우선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토록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공업형 - 도시내외로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의 경제성을 지니면서 입지할 기능의 특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부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을 우선 고려 · 부지는 평탄한 지형조건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최소규모 이상의 개발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 · 교통이 편리하고, 화물수송에 관련된 주요 교통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 · 주변지역에 고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익시설이 있거나 새로운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산업폐수와 산업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하고, 공업용수와 동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 · 수도권 이전공장 및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 파생되는 산업시설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산재된 공장의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관리지역내 기 조성된 산업시설에 대한 증설 및 신규 산업시설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이용을 위해 산업형에 한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정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기 개발면적 기준으로 개발면적의 100%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총량으로 확보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 개발수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변 경 사 유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2008년 7월 1일) 내용에 근거하여, 기존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 및 위치표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 금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 및 주용도를 표기하지 않고, 허용총량과 단계별 생활권별로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 및 주용도를 표기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방향과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의 증가는 기존의 개발수요에 의해 확보된 총량 외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당해지역에 대덕구 행정타운 건립예정)과 시 및 구의 역점시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량 추가 확보 필요 ○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는 국가정책사업(대덕 R&D특구)을 제외시 대전시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정책(시가화지역내 공업지역대부분이 기 개발되었으며, 기존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시가화지역에 입지가 어려운 산업시설 정비 필요)을 수행할 수 있는 용지가 1.48km²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경제와 산업활성화를 위해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의 추가 확보 필요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입지가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내 기개발 면적에 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총량의 확보 필요
보 고 서	○ 72 ~ 74장	

구분

기정

변경

■ 생활권별 단계별 토지공급방안

1) 기본방향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즉시적 공급용지로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의 개발 및 대덕R&D특구 등의 친환경적 개발 유도

도시공간구조 설정방향에 부합되는 시가지정비 및 개발사업의 우선적 시행

대전시 추진 중점사업부터 우선 시행

개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발파급 효과가 큰 지역부터 개발

개발수요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을 고려한 단계적 개발 유도

<단계별 시가지 개발계획>

(단위 : km²)

용도별 \ 단계별	1단계 (2001~2005)	2단계 (2006~2010)	3단계 (2011~2015)	4단계 (2016~2020)
계 획 구 역	539.73	539.73	539.73	539.73
시 가 화 용 지	86.95	94.06	98.97	102.90
주 거 지 역	68.10	73.95	78.66	82.31
상 업 지 역	7.74	8.06	8.26	8.54
공 업 지 역	11.11	12.05	12.05	12.05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452.78	445.67	440.76	436.83

■ 생활권별 단계별 토지공급방안

1) 기본방향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은 금회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유효함

시가화용지의 생활권별 토지공급은 기정계획을 유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정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적정배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내 총량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생활권별 별도 구분 하지 않음

시가화예정용지는 수요 발생시 생활권별 단계별 총량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은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 개발 유도

<단계별 시가지 개발계획>

(단위 : km²)

용도별 \ 단계별	2단계(km ²) (2006~2010)			3단계(km ²) (2011~2015)			4단계(km ²) (2016~2020)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획 구 역	539.73	539.79	증0.06	539.73	539.79	증0.06	539.73	539.79	증0.06
시 가 화 용 지	94.06	94.06	-	98.97	98.97	-	102.90	102.90	-
주 거 용 지	73.95	73.95	-	78.66	78.66	-	82.31	82.31	-
상 업 용 지	8.06	8.06	-	8.26	8.26	-	8.54	8.54	-
공 업 용 지	12.05	12.05	-	12.05	12.05	-	12.05	12.05	-
시가화예정용지	12.48	10.21	감2.27	15.01	16.71	증1.70	17.40	19.12	증1.72
주 거 형	2.97	3.27	증0.30	5.38	6.28	증0.90	7.77	8.67	증0.90
상 업 형	0.11	0.11	-	0.11	0.11	-	0.11	0.11	-
공 업 형	9.40	6.73	감2.67	9.52	10.17	증0.65	9.52	10.17	증0.65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0.10	증0.10	-	0.15	증0.15	-	0.17	증0.17
보 전 용 지	433.19	435.52	증2.33	425.75	424.11	감1.64	419.43	417.77	감1.66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3) 시가화에정용지 개발계획 < 단계별·주용도별 시가화에정용지 개발계획> (단위 : km²) <table> <tr> <th>개발유형</th> <th>소계</th> <th>2단계 (2010)</th> <th>3단계 (2015)</th> <th>4단계 (2020)</th> </tr> <tr> <td>총 계</td> <td>19.12</td> <td>10.21</td> <td>6.50</td> <td>2.41</td> </tr> <tr> <td>주 거 형</td> <td>8.67</td> <td>3.27</td> <td>3.01</td> <td>2.39</td> </tr> <tr> <td>상 업 형</td> <td>0.11</td> <td>0.11</td> <td>-</td> <td>-</td> </tr> <tr> <td>공 업 형</td> <td>10.17</td> <td>6.73</td> <td>3.44</td> <td>-</td> </tr> <tr> <td>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td> <td>0.17</td> <td>0.10</td> <td>0.05</td> <td>0.02</td> </tr> </table> <시가화에정용지 생활권별 개발계획> (단위 : km²) <table> <tr> <th>생 활 권</th> <th>소계</th> <th>2단계 (2010)</th> <th>3단계 (2015)</th> <th>4단계 (2020)</th> </tr> <tr> <td>계</td> <td>18.95</td> <td>10.11</td> <td>6.45</td> <td>2.39</td> </tr> <tr> <td>신 탄진</td> <td>4.95</td> <td>4.30</td> <td>0.65</td> <td>-</td> </tr> <tr> <td>유 성</td> <td>3.72</td> <td>3.13</td> <td>-</td> <td>0.59</td> </tr> <tr> <td>둔 산</td> <td>0.38</td> <td>-</td> <td>0.19</td> <td>0.19</td> </tr> <tr> <td>송 촌</td> <td>0.89</td> <td>-</td> <td>0.53</td> <td>0.36</td> </tr> <tr> <td>진 잠</td> <td>6.67</td> <td>2.10</td> <td>4.37</td> <td>0.20</td> </tr> <tr> <td>보 문</td> <td>2.34</td> <td>0.58</td> <td>0.71</td> <td>1.05</td> </tr> </table>	개발유형	소계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총 계	19.12	10.21	6.50	2.41	주 거 형	8.67	3.27	3.01	2.39	상 업 형	0.11	0.11	-	-	공 업 형	10.17	6.73	3.44	-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0.17	0.10	0.05	0.02	생 활 권	소계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계	18.95	10.11	6.45	2.39	신 탄진	4.95	4.30	0.65	-	유 성	3.72	3.13	-	0.59	둔 산	0.38	-	0.19	0.19	송 촌	0.89	-	0.53	0.36	진 잠	6.67	2.10	4.37	0.20	보 문	2.34	0.58	0.71	1.05
	개발유형	소계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총 계	19.12	10.21	6.50	2.41																																																																				
주 거 형	8.67	3.27	3.01	2.39																																																																				
상 업 형	0.11	0.11	-	-																																																																				
공 업 형	10.17	6.73	3.44	-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0.17	0.10	0.05	0.02																																																																				
생 활 권	소계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계	18.95	10.11	6.45	2.39																																																																				
신 탄진	4.95	4.30	0.65	-																																																																				
유 성	3.72	3.13	-	0.59																																																																				
둔 산	0.38	-	0.19	0.19																																																																				
송 촌	0.89	-	0.53	0.36																																																																				
진 잠	6.67	2.10	4.37	0.20																																																																				
보 문	2.34	0.58	0.71	1.05																																																																				
변 경 사 유	○시가화에정용지의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단계별 생활권별 토지공급계획을 도시기본 계획 수립지침 5-4-3의 용도구분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수정계획 수립																																																																							
보 고 서	○ 75 ~ 77장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기성 시가지정비 및 신시가지 개발 1) 기본방향 •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따른 계획적 정비 유도 • 대규모 미개발 녹지의 계획적 관리에 의한 신시가지 개발유도 • 기존 도심지역의 활성화 유도 및 주택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정비 • 역세권지역의 고밀화로 토지이용의 고도화 도모 • 도시경관을 고려한 시가지밀도 규제	■ 기성 시가지정비 및 신시가지 개발 1) 기본방향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기성시가지 정비 및 신시가지 개발의 계획내용을 유지하면서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개발이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정비 및 개발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 2) 기성시가지 개발의 기본방향 • 당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도심 및 지구중심지역을 전략적 육성 • 기존의 무질서한 도시구조 개편을 통해 주거환경 및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 다만, 주거환경이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로 과도한 시가지 정비 억제 3) 신시가지 개발의 기본방향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진행상황과 도시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기존도심과 상호 유기적으로 개발사업 추진 •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별로 개발 •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저밀도를 유지토록 하며, 개발제한구역내 해제가능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후 시가화용지로 편입 유도
변 경 사 유	○기성 시가지 및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성 시가지와 신시가지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시 고려사항을 설정	
보 고 서	○ 77장	

■ 교통·물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가. 광역교통체계

■ 기본방향

•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역교통망의 검토를 통한 반영 및 변경

• 「제1차 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 2001.12」의 적극 수용

• 광역교통망을 통한 지역 도시간 연계망 구축

1. 기본 방향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사항을 제외한 도시교통지표 및 계획은 지정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유지하되

• 최근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7.12)’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대전광역시, 2008.11)’, ‘대전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대전광역시, 2005.6)’을 반영

2. 목표 및 전략

정책목표		전 략
지 속 가 능 한 교 통 체 계 구 축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	기능제고중심의 도로계획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에너지·환경 지향적 교통체계	도시철도, 버스의 통합 대중교통체계 교통에너지 절감
	인간 지향적 교통체계	지역여건에 조화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이용자 중심의 교통 시설운영
	효율적·환경 친화적 물류체계	인간 존중형 선진·녹색 물류체계 수립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물류체계 구현

3. 광역교통체계

가. 기본방향

• 신규 교통축 육성을 통한 교통량 분산

• 기존 광역도로의 처리용량 증대

• 대전시 주변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2020년 광역도로망 체계 - 고속순환축(경부-호남-남부순환고속도로)을 활용하여 도시외곽간선 교통체계 보완 - 권역내 통합연계를 위하여 기존의 남북 위주 도로체계를 동서축으로 보완(기존 계획을 반영하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공사중), 대전 남부순환선(완공)등을 통한 동서축 보강) - 청주권 및 청주(공항)과의 연계를 위한 대전~충북고속도로 연계된 천변고속화도로~충북고속도로간 고속화도로신설(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 1993, 대전-청주간 고속도로계획안 변경) -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도로체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대전광역권 공간구조 계획을 고려하여 광역 순환망 형성(기존 계획과 신설계획과 연계)하기위하여 '계룡~청원~보은~옥천~금산~벌곡'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고속화도로를 계획(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 1997, 서부외곽순환도로 반영) - 광역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권역의 동부지역 연결을 위하여 기존 국도 19호선의 '보은~옥천' 구간을 4차로로 확장개량(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 1993, 국도19호선 확장) - 부곡~금산간 국지도68호선의 선형개량을 통한 고속화 도로 계획	나. 광역교통계획 - 장래 행정도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연기·행정도시축 교통체계 보완 - 대전, 행정도시, 연기축 보완을 위해 대전외삼동 연결도로 (행정 도시 순환도로 ~ 대전 외삼동) 구간을 8차로로 확장 개량 - 행정도시와의 지역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행정도시 ~ 구즉 삼거리' 구간을 6차로로 확장 개량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07. 12) - 군도14호선(조치원길)과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토록 하여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결성 강화 (대전광역시 교통정비중기 계획, 2008.11) <광역교통 계획(추가)> <table border="1" data-bbox="844 1111 1426 1357"> <thead> <tr> <th>구 분</th><th>광역교통계획(추가)</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광 역 도 로</td><td>① 대전외삼동 연결도로 (행정도시 ~ 외삼동)</td><td></td></tr> <tr> <td>② 군도14호선~구즉삼거리간 도로확장</td><td></td></tr> <tr> <td>③ 군도14호선~경부고속도로</td><td></td></tr> </tbody> </table>	구 분	광역교통계획(추가)	비 고	광 역 도 로	① 대전외삼동 연결도로 (행정도시 ~ 외삼동)		② 군도14호선~구즉삼거리간 도로확장		③ 군도14호선~경부고속도로	
구 분	광역교통계획(추가)	비 고										
광 역 도 로	① 대전외삼동 연결도로 (행정도시 ~ 외삼동)											
	② 군도14호선~구즉삼거리간 도로확장											
	③ 군도14호선~경부고속도로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4. 물류계획 1) 기본방향 - 도시물류시설은 화물운송중심의 화물터미널 단지, 집배송단지와 상업유통중심의 도소매 단지, 농수산물도매단지 등으로 구분하고, 물류비용의 최소화 및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 배치 - 화물물동량 및 통행량의 흐름상 주요 간선축을 따라 배치 - 수요를 고려한 최적입지, 주거지로부터 분리,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2) 화물터미널 배치구상 - 대전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성구 봉산동 33만㎡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배치하여 도시물류수요 담당 <화물터미널 배치구상> <table> <tr> <th colspan="2">구 분</th> <th>내 용</th> <th>위 치</th> </tr> <tr> <td rowspan="2">기 정</td> <td>읍내동 화물터미널</td> <td>대전 동부권 물동량 처리</td> <td>읍내동 인근</td> </tr> <tr> <td>중부 화물터미널</td> <td>대전 서남권 물동량 처리</td> <td>진잠동 인근</td> </tr> <tr> <td>신 규</td> <td>북대전 화물터미널</td> <td>대전 서북권 물동량 처리</td> <td>봉산동 인근</td> </tr> </table>	구 분		내 용	위 치	기 정	읍내동 화물터미널	대전 동부권 물동량 처리	읍내동 인근	중부 화물터미널	대전 서남권 물동량 처리	진잠동 인근	신 규	북대전 화물터미널	대전 서북권 물동량 처리	봉산동 인근
	구 분		내 용	위 치													
기 정	읍내동 화물터미널	대전 동부권 물동량 처리	읍내동 인근														
	중부 화물터미널	대전 서남권 물동량 처리	진잠동 인근														
신 규	북대전 화물터미널	대전 서북권 물동량 처리	봉산동 인근														
변 경 사 유	○최근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7.12)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대전광역시, 2008.11), 대전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대전광역시, 2005.06)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사항을 추가로 반영																
보 고 서	○ 79 ~ 8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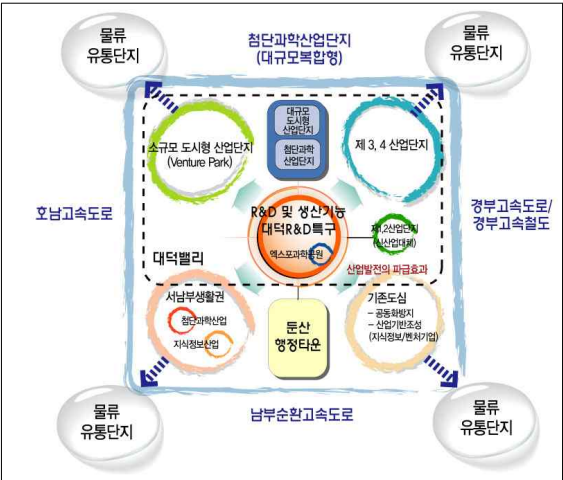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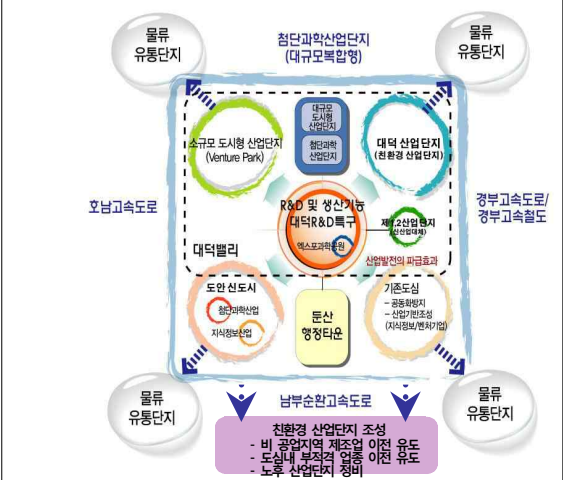
■ 정보통신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정보화도시 추진전략 • 대전고속철도종합역사 : “정보통신기반 정비 및 정보화업무단지 구축” - 기간 정보통신망 정비 및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텔레포트, 비즈니스파크, 인텔리전트빌딩 등 조성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대덕R&D 특구 : “정보의 창조·발신기지” - 정보의 창조 → 국가 정보화 시범지역 - 국제적 정보 교류 촉진 및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 • 서남부권 : “정보를 활용한 풍요로운 도시 생활의 시범지역” - 지역정보화 시범지역 - 도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 교통·안전, 방재 - 생활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 직업, 교육, 문화, 복지 ■ 지역정보화 시범단지 조성 : 서남부권 • 대덕R&D 특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실현 • 도시관리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편리하고 수준높은 시민생활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시운영, 관리, 행정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적 정보통신의 거점을 이루도록 함. • 간선가로(70m)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 도안신도시개발지구 U-City 추진 사업 ■ 사업추진 개요 i)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대전시 서구, 유성구 일원 • 면 적 : 6,112천 m² • 사업기간 : 2003 ~ 2011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외 2개사 공동 시행 ii)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 면 적 : 1,790천 m² • 사업기간 : 2003 ~ 2010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청 ■ 추진목적 •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도시기능 향상을 통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 목표 및 전략 •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도시시설에 유비쿼터스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망으로 센터와 연결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관로공사 : 토공사, 관로공사 등 - 선로공사 : 광케이블 포설, 통신배선 설비 등 - 자재설치공사 : CCTV, 교통, 데이터 전송설비 등 현장 시설물 설치 • U-서비스 개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각종 U-서비스 개발 - 교통, 환경, 안전, 시설물 등 공공 U-City 서비스 - U-홈, U-오피스, 원카드 서비스 등 민간 U-City 서비스 - U-포털, U-교육, U-의료 등 대시민 U-City 서비스 • 정보센터 설치 도시공간과 도시시설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고, U-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센터 설치 - 정보관제센터 : 상황판, 네트워크구성 인터리어 등 -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 U-City 통합 시스템 구축 - 통합데이터구축 : 수치지형도제작, 도시 기반시설물 구축 등 ■ 추진계획 및 관련주체별 역할 • 실무협의회 구성 - U-City 건설은 제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운용, 유지관리 전 과정과 연결된 과정으로 지자체의 각 부서, 경찰, 소방, 의료 등 관련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U-City 추진 시 각종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기구 필요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USN 구축 및 정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U-서비스 범위 등 U-City 건설 범위 및 규모를 결정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U-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시설물의 수량 및 설치위치 결정 등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결정 • 구축 및 운영 - 설계에 따라 통신망 및 시설의 설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U-서비스를 실현하고,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U-서비스를 운용 • 관련주체별 역할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진주체</th><th>역할</th><th>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사업 시행자</td><td>U-City구축</td><td>정보센터 설비구축 U-City서비스 구축 도시정보통신망 구축</td></tr> <tr> <td>지자체</td><td>U-City운영</td><td>U-City서비스 및 정보센터 운영</td></tr> <tr> <td>민간</td><td>상용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td><td>상업용 통신망 설치 및 임대 상용 U-City서비스 개발 및 운영</td></tr> </tbody> </table>	추진주체	역할	주요내용	사업 시행자	U-City구축	정보센터 설비구축 U-City서비스 구축 도시정보통신망 구축	지자체	U-City운영	U-City서비스 및 정보센터 운영	민간	상용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상업용 통신망 설치 및 임대 상용 U-City서비스 개발 및 운영
추진주체	역할	주요내용												
사업 시행자	U-City구축	정보센터 설비구축 U-City서비스 구축 도시정보통신망 구축												
지자체	U-City운영	U-City서비스 및 정보센터 운영												
민간	상용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상업용 통신망 설치 및 임대 상용 U-City서비스 개발 및 운영												
변 경 사 유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3.28)에 따라 최초로 도시기본 계획 정비시 U-city 추진사업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대전 서남부지구 및 학하지구 U-City 추진사업 반영													
보 고 서	○ 86 ~ 90장													

■ 산업개발계획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 전원형 산업단지 구상 	■ 기본방향 • 지정 도시기본계획상 산업개발계획은 금회 변경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유효함 •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개발구상 개념도입 • 산업용지의 개발 시 복합형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고려사항을 제시 ■ 전원형 산업단지 구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산업용지 복합개발 가. 산업용지 복합개발의 기본방향 • 친환경 산업단지 및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개발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발 • 산업용지의 복합개발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시내 구축되어 있는 생활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첨단산업에 활력을 도입함으로써 산(첨단기술연구 및 생산), 학(기초학술연구 및 응용분야연구), 연(첨단과학기술 및 지식정보의 연구 및 개발), 주(쾌적한 생활환경 및 서비스) 등의 기능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나. 산업용지 복합개발시 고려사항 • 산업의 위치, 규모, 유치업종 등 산업 특성에 따라 산업용지의 기능 설정 및 공간배치 • 생산, 지원, 연구개발, 주거, 휴식 등 기능별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효율적 배치 • 유치산업의 성격에 따라 배후 주거지역의 위치고려 · 도시형 업종위주의 경우 환경피해 우려가 적으므로 주향공간을 생산공간과 연접배치 하되 일정간격의 완충지대 확보 · 시가화지역과 인접하고 있을 경우 기존 시가지의 고밀 이용이나 외곽지역 확장 개발에 의한 유발인구 수용방안 검토 · 중화학 산업단지 등과 같이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거공간은 생산공간으로 부터 충분한 거리 유지 •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휴식, 산책, 운동 등 여가 공간 기능과 함께 생산공간이나 도로와 주거 지역간의 완충기능 부여
변 경 사 유	○ 산업단지 개발구상이 고속도로 내부에 치우쳐 있어 고속도로 외부의 개발가능한 남부지역내 산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전원형산업단지 구상에 남부지역에 대한 창조산업단지 구상을 추가 ○ 산업용지 복합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복합개발시 각 기능들 간 조화될 수 있도록 지침제시	
보 고 서	○ 93 ~ 96장	

■ 주거환경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주택지표						■ 주택지표																																																																																																																									
	<table><tr><th>구 분</th><th>단위</th><th>2006년 (현재)</th><th>2010년</th><th>2015년</th><th>2020년</th></tr><tr><td rowspan="9">기 정</td><td>인구</td><td>천명</td><td>1,479</td><td>1,740</td><td>1,880</td><td>2,000</td></tr><tr><td>세대당 인구</td><td>인/세 대</td><td>2.9</td><td>2.8</td><td>2.7</td><td>2.7</td></tr><tr><td>총 세대수</td><td>천 호</td><td>518</td><td>621</td><td>696</td><td>741</td></tr><tr><td>일반 세대수</td><td>천 세대</td><td>379</td><td>508</td><td>570</td><td>606</td></tr><tr><td>주 택 수</td><td>천 호</td><td>395</td><td>515</td><td>586</td><td>636</td></tr><tr><td>주택 보급률</td><td>%</td><td>104.0</td><td>101.2</td><td>102.8</td><td>105.2</td></tr><tr><td>신규 주택수요</td><td>천 호</td><td>-</td><td>78</td><td>71</td><td>51</td></tr><tr><td>연 평균 신축 주택수요</td><td>천 호</td><td>-</td><td>16</td><td>14</td><td>10</td></tr></table>						구 분	단위	2006년 (현재)	2010년	2015년	2020년	기 정	인구	천명	1,479	1,740	1,880	2,000	세대당 인구	인/세 대	2.9	2.8	2.7	2.7	총 세대수	천 호	518	621	696	741	일반 세대수	천 세대	379	508	570	606	주 택 수	천 호	395	515	586	636	주택 보급률	%	104.0	101.2	102.8	105.2	신규 주택수요	천 호	-	78	71	51	연 평균 신축 주택수요	천 호	-	16	14	10	<table><tr><th>구 분</th><th>단위</th><th>2006년 (현재)</th><th>2010년</th><th>2015년</th><th>2020년</th></tr><tr><td rowspan="9">변 경</td><td>인구</td><td>천명</td><td>1,479</td><td>1,740</td><td>1,880</td><td>2,000</td></tr><tr><td>세대당 인구</td><td>인/세 대</td><td>2.9</td><td>2.8</td><td>2.7</td><td>2.7</td></tr><tr><td>총 세대수</td><td>천 호</td><td>518</td><td>621</td><td>696</td><td>741</td></tr><tr><td>일반 세대수</td><td>천 세 대</td><td>379</td><td>482</td><td>536</td><td>564</td></tr><tr><td>일반 세대수 비율(주2)</td><td>%</td><td>-</td><td>77.56</td><td>77.03</td><td>76.06</td></tr><tr><td>주 택 수</td><td>천 호</td><td>395</td><td>515</td><td>586</td><td>636</td></tr><tr><td>주택 보급률</td><td>%</td><td>104.0</td><td>107.0</td><td>109.0</td><td>112.7</td></tr><tr><td>신규 주택수요</td><td>천 호</td><td>-</td><td>120</td><td>71</td><td>51</td></tr><tr><td>연 평균 신축 주택수요</td><td>천 호</td><td>-</td><td>24</td><td>14</td><td>10</td></tr></table>						구 분	단위	2006년 (현재)	2010년	2015년	2020년	변 경	인구	천명	1,479	1,740	1,880	2,000	세대당 인구	인/세 대	2.9	2.8	2.7	2.7	총 세대수	천 호	518	621	696	741	일반 세대수	천 세 대	379	482	536	564	일반 세대수 비율(주2)	%	-	77.56	77.03	76.06	주 택 수	천 호	395	515	586	636	주택 보급률	%	104.0	107.0	109.0	112.7	신규 주택수요	천 호	-	120	71	51	연 평균 신축 주택수요	천 호	-	24	14	10
	구 분	단위	2006년 (현재)	2010년	2015년	2020년																																																																																																																										
	기 정	인구	천명	1,479	1,740	1,880	2,000																																																																																																																									
		세대당 인구	인/세 대	2.9	2.8	2.7	2.7																																																																																																																									
		총 세대수	천 호	518	621	696	741																																																																																																																									
		일반 세대수	천 세대	379	508	570	606																																																																																																																									
		주 택 수	천 호	395	515	586	636																																																																																																																									
		주택 보급률	%	104.0	101.2	102.8	105.2																																																																																																																									
		신규 주택수요	천 호	-	78	71	51																																																																																																																									
연 평균 신축 주택수요		천 호	-	16	14	10																																																																																																																										
구 분		단위	2006년 (현재)	2010년	2015년	2020년																																																																																																																										
변 경	인구	천명	1,479	1,740	1,880	2,000																																																																																																																										
	세대당 인구	인/세 대	2.9	2.8	2.7	2.7																																																																																																																										
	총 세대수	천 호	518	621	696	741																																																																																																																										
	일반 세대수	천 세 대	379	482	536	564																																																																																																																										
	일반 세대수 비율(주2)	%	-	77.56	77.03	76.06																																																																																																																										
	주 택 수	천 호	395	515	586	636																																																																																																																										
	주택 보급률	%	104.0	107.0	109.0	112.7																																																																																																																										
	신규 주택수요	천 호	-	120	71	51																																																																																																																										
	연 평균 신축 주택수요	천 호	-	24	14	10																																																																																																																										
변 경 사 유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목표연도인 2010년 주택보급률이 101.2%이나, 2006년 말 현재 104.0%로 주택보급율의 장기목표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금회 기본계획 변경시 주택 보급률 재검토																																																																																																																															
	○도시기본계획상 주택보급률은 과거 10년간의 평균 일반가구수 비율(81.82%)을 기준으로 장래 주택보급률을 추정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수의 비율을 목표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금회 변경시 일반가구수의 비율을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율로 수정 보완하여 주택보급률 변경																																																																																																																															
보 고 서	○ 97 ~ 99장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대기환경 지표					■ 대기환경 지표									
	항 목		단 위	대기환경기준	WHO권고치	대전시	항 목		단 위	대기환경기준	WHO권고치	대전시			
	SO ₂		ppm, 연평균	0.02	0.019	0.02	SO ₂	기정	ppm, 연평균	0.02	0.019	0.02			
						변경					0.015				
	CO		ppm, 8시간평균	9	9	9	CO	기정	ppm, 8시간평균	9	8.6	9			
						변경					7				
	NO ₂		ppm, 연평균	0.05	0.021	0.04	NO ₂	기정	ppm, 연평균	0.03	0.021	0.04			
						변경					0.02				
	PM ₁₀		μg/m ³ , 연평균	70	-	60	PM ₁₀	기정	μg/m ³ , 연평균	50	-	60			
						변경					40				
O ₃		ppm, 8시간평균	0.06	0.06	0.06	O ₃		ppm, 8시간평균	0.06	0.06	0.06				
Pb		μg/m ³ , 연평균	0.5	0.5	0.5	Pb		μg/m ³ , 연평균	0.5	0.5	0.5				
■ 하수도 보급계획					■ 하수도 보급계획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하수도보급율(%)		95	97	98	100	하수도보급율(%)		95	97	97	98	98	99	100	99
하수관거보급율(%)		90	93	94	95	하수관거보급율(%)		90	76	93	87	94	94	95	100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환경기본조례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환경지표 설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7.12, 대전광역시)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계획과의 연계와 조화를 위해 지표 변경															
보고서															
○ 100 ~ 102장															

■ 여가·공원·녹지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내
용

■ 계획공원지표

구 분	현 황		계 획 지 표							
	2000년	인당 면적	2005년	인당 면적	2010년	인당 면적	2015년	인당 면적	2020년	인당 면적
도시 자연 공원	35,864	25.8	37,600	23.5	38,106	21.9	38,540	20.5	40,000	20.0
근린 공원	9,721	7.0	11,200	7.0	12,180	7.0	13,160	7.0	14,000	7.0
어린이 공원	580	0.4	1,600	1.0	1,740	1.0	1,880	1.0	2,200	1.1
체육 공원	99	0.1	1,600	1.0	2,610	1.5	3,760	2.0	4,200	2.1
합계	46,264	33.3	52,000	32.5	54,636	31.4	57,340	30.5	60,400	30.2
인구 (만인)	139		160		174		188		200	

■ 공원 지표

구분	단위	현재	목표	증감	비고
인구	명	1,475,659	2,000,000	524,341	
1인당 공원 면적	m ² /인	10.4	14.2	증) 3.8	
공원 지정	개소	438	803	증) 365	

■ 기본방향

• 기정 도시기본계획은 금회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유효함

• 『도시공원법』이 2005.3.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체계 및 규정이 변경되어, 도시 기본계획 변경시 개정 법률에 맞추어 공원·녹지계획을 수정

•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2008.12』의 내용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발전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유도

• 공원녹지의 양적 계획을 탈피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등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

구분	기정	변경																																																																		
변경내용	■ 공원녹지의 1인당 면적지표 <table><thead><tr><th>구분</th><th>도시기본계획 (1000㎡)</th><th>생태도시계획 (1000㎡)</th><th>법적기준(1000㎡) (도시공원법)</th><th>지표 (㎡/인)</th></tr></thead><tbody><tr><td>도시자연공원</td><td>41,360</td><td>26,613</td><td>12,600(6㎡/인)</td><td>12.6</td></tr><tr><td>근린공원</td><td>11,759</td><td>10,200</td><td rowspan="4">6,300(3㎡/인)</td><td>4.8</td></tr><tr><td>어린이공원</td><td>2,100</td><td>4,500</td><td>2.1</td></tr><tr><td>체육공원</td><td>2,652</td><td>3,000</td><td>1.4</td></tr><tr><td>생태공원</td><td>-</td><td>1,450</td><td>0.7</td></tr></tbody></table>	구분	도시기본계획 (1000㎡)	생태도시계획 (1000㎡)	법적기준(1000㎡) (도시공원법)	지표 (㎡/인)	도시자연공원	41,360	26,613	12,600(6㎡/인)	12.6	근린공원	11,759	10,200	6,300(3㎡/인)	4.8	어린이공원	2,100	4,500	2.1	체육공원	2,652	3,000	1.4	생태공원	-	1,450	0.7	■ 공원계획 •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정비체계 수립 •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 확충계획 마련 공원계획 달성목표 <table><thead><tr><th>구분</th><th>기준 연도(2008)</th><th>목표 연도(2020)</th><th>비교</th></tr></thead><tbody><tr><td rowspan="10">지정개소</td><td>• 438 개소</td><td>• 803개소</td><td>증) 365개소</td></tr><tr><td>- 도시자연공원 : 7개소</td><td>- 도시자연공원구역 : 7개소</td><td>감) 7 / 증) 7개소</td></tr><tr><td>- 근 린 공 원 : 82개소</td><td>- 근 린 공 원 : 174개소</td><td>증) 92개소</td></tr><tr><td>- 어린이 공원 : 296개소</td><td>- 어린이 공원 : 514개소</td><td>증) 218개소</td></tr><tr><td>- 소 공 원 : 48개소</td><td>- 소 공 원 : 82개소</td><td>증) 34개소</td></tr><tr><td>- 묘 지 공 원 : 1개소</td><td>- 묘 지 공 원 : 2개소</td><td>증) 1개소</td></tr><tr><td>- 체 육 공 원 : 3개소</td><td>- 체 육 공 원 : 10개소</td><td>증) 7개소</td></tr><tr><td>- 수 변 공 원 : 1개소</td><td>- 수 변 공 원 : 6개소</td><td>증) 5개소</td></tr><tr><td></td><td>- 역 사 공 원 : 3개소</td><td>증) 3개소</td></tr><tr><td></td><td>- 문 화 공 원 : 5개소</td><td>증) 5개소</td></tr><tr><td>지정면적</td><td>• 전체 : 51.27 - 생활권 공원 : 11.98 - 주 제 공 원 : 3.40 - 도시자연공원 : 35.89</td><td>• 전체 : 59.55 - 생활권 공원 : 21.06 - 주 제 공 원 : 7.26 - 도시자연공원 : - - 도시자연공원구역 : 31.23</td><td>증) 8.28 증) 9.08 증) 3.86 감) 35.89 증) 31.23</td></tr></tbody></table>	구분	기준 연도(2008)	목표 연도(2020)	비교	지정개소	• 438 개소	• 803개소	증) 365개소	- 도시자연공원 : 7개소	- 도시자연공원구역 : 7개소	감) 7 / 증) 7개소	- 근 린 공 원 : 82개소	- 근 린 공 원 : 174개소	증) 92개소	- 어린이 공원 : 296개소	- 어린이 공원 : 514개소	증) 218개소	- 소 공 원 : 48개소	- 소 공 원 : 82개소	증) 34개소	- 묘 지 공 원 : 1개소	- 묘 지 공 원 : 2개소	증) 1개소	- 체 육 공 원 : 3개소	- 체 육 공 원 : 10개소	증) 7개소	- 수 변 공 원 : 1개소	- 수 변 공 원 : 6개소	증) 5개소		- 역 사 공 원 : 3개소	증) 3개소		- 문 화 공 원 : 5개소	증) 5개소	지정면적	• 전체 : 51.27 - 생활권 공원 : 11.98 - 주 제 공 원 : 3.40 - 도시자연공원 : 35.89	• 전체 : 59.55 - 생활권 공원 : 21.06 - 주 제 공 원 : 7.26 - 도시자연공원 : - - 도시자연공원구역 : 31.23	증) 8.28 증) 9.08 증) 3.86 감) 35.89 증) 31.23
	구분	도시기본계획 (1000㎡)	생태도시계획 (1000㎡)	법적기준(1000㎡) (도시공원법)	지표 (㎡/인)																																																															
도시자연공원	41,360	26,613	12,600(6㎡/인)	12.6																																																																
근린공원	11,759	10,200	6,300(3㎡/인)	4.8																																																																
어린이공원	2,100	4,500		2.1																																																																
체육공원	2,652	3,000		1.4																																																																
생태공원	-	1,450		0.7																																																																
구분	기준 연도(2008)	목표 연도(2020)	비교																																																																	
지정개소	• 438 개소	• 803개소	증) 365개소																																																																	
	- 도시자연공원 : 7개소	- 도시자연공원구역 : 7개소	감) 7 / 증) 7개소																																																																	
	- 근 린 공 원 : 82개소	- 근 린 공 원 : 174개소	증) 92개소																																																																	
	- 어린이 공원 : 296개소	- 어린이 공원 : 514개소	증) 218개소																																																																	
	- 소 공 원 : 48개소	- 소 공 원 : 82개소	증) 34개소																																																																	
	- 묘 지 공 원 : 1개소	- 묘 지 공 원 : 2개소	증) 1개소																																																																	
	- 체 육 공 원 : 3개소	- 체 육 공 원 : 10개소	증) 7개소																																																																	
	- 수 변 공 원 : 1개소	- 수 변 공 원 : 6개소	증) 5개소																																																																	
		- 역 사 공 원 : 3개소	증) 3개소																																																																	
		- 문 화 공 원 : 5개소	증) 5개소																																																																	
지정면적	• 전체 : 51.27 - 생활권 공원 : 11.98 - 주 제 공 원 : 3.40 - 도시자연공원 : 35.89	• 전체 : 59.55 - 생활권 공원 : 21.06 - 주 제 공 원 : 7.26 - 도시자연공원 : - - 도시자연공원구역 : 31.23	증) 8.28 증) 9.08 증) 3.86 감) 35.89 증) 31.23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되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 105 ~ 110장																																																																			